



## 공사도급계약조건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와 (주)에스에프에이(이하 “파트너사”라 한다)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도급사무의 내용 및 계약문서)

- ① 본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조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본 계약에 의한 “파트너사”의 도급사무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르되, “케이티앤지”의 요구 또는 쌍방 합의로 문서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케이티앤지”와 “파트너사” 사이의 합의는 문서로 작성되어 쌍방이 기명날인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연장)

- ① “파트너사”는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문서로 “케이티앤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케이티앤지”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 후 “파트너사”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케이티앤지”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 ① “케이티앤지”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파트너사”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트너사”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케이티앤지”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액은 쌍방의 합의가 없는 한 동일한 자재 등의 확보 또는 수리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파트너사”는 “케이티앤지”가 지급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케이티앤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2장 계약의 이행확보

#### 제5조(계약보증금 및 처리)

- ①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0/100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케이티앤지”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티앤지”와 “파트너사”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보증서로 납부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 ③ “파트너사”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케이티앤지”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파트너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케이티앤지”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케이티앤지”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파트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케이티앤지”는 제26조 제1항 또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파트너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이행보증)**

- ① “케이티앤지”가 입찰조건으로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파트너사”는 공사이행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보증시공을 하거나 또는 보증시공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케이티앤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20]/100로 정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파트너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케이티앤지”는 본 공사이행보증을 한 보증기관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현금의 납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케이티앤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케이티앤지”가 지정한 제3자가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경우에도 “파트너사”는 “파트너사”가 수행한 계약이행 또는 행위부분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계약의 이행**

**제7조(착공)**

- ① “파트너사”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케이티앤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2. 공사공정예정표
  -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4. 기타 “케이티앤지”가 지정한 사항
- ② “파트너사”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일시정지)**

- ① “케이티앤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정지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3. 기타 재해, 설계변경, 관련 인허가 지연 등 “케이티앤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파트너사”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케이티앤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케이티앤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금융기관(“케이티앤지”의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케이티앤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설계변경 등)**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현저히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기타 “케이티앤지”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1. 증감된 물량에 적용될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 “파트너사”에게 제공 또는 공개된 예정가격단가가 있는 경우에 그 예정가격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파트너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케이티앤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물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율에 의한다.
- ③ 전항 제1호의 규정은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트너사”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설계변경사

본 문서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생성한 문서입니다.  
 본 문서에 대한 효력은 계약주체인 양사가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양사 전자서명 여부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를 입증할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케이티엔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케이티엔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설계변경의 인정여부를 회신한다. 다만, “케이티엔지”는 공정이행의 지연이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① “케이티엔지”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케이티엔지”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파트너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 제11조(특허권의 사용 및 발굴물 처리)

- ①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파트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 등 발굴물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케이티엔지”의 소유에 귀속한다.

#### 제12조(폐기물의 처리 등)

“파트너사”는 “케이티엔지”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파트너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케이티엔지”는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하도급등)

- ① “파트너사”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수급인의 명칭, 시공능력 기타 하도급의 적정성심사 및 인정여부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케이티엔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케이티엔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하도급계약 이행 중) 하수급인,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수급인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케이티엔지”의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파트너사”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그 소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기타 “케이티엔지”와 “파트너사” 및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본 공사계약조건 및 별도의 서면약정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①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파트너사”와 하수급인의 계약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으로서 위 법률 제14조의 직접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케이티엔지”가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케이티엔지”의 “파트너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케이티엔지”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가의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하수급인이 “파트너사”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써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파트너사”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파트너사”가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케이티엔지”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케이티엔지”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파트너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이행 중 부담한 채무(“파트너사”에 대한 채무와 하수급인의 노무자에 대한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 채무를 포함한다)를 불이행 또는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 및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으로 인하여 “파트너사” 및 노무자 기타의 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사”와 하수급인의 계약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케이티엔지”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검사)

- ① “파트너사”는 공사를 완성(기성부분에 관한 대가지급을 위한 검사인 때에는 그 기성부분의 완성을 말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케이티엔지”에게(관련법규에 의해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케이티앤지”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전항의 통지수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트너사”의 입회하에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파트너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티앤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파트너사”와 합의한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케이티앤지”는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파트너사”에게 통지한다.

③ “파트너사”는 제2항에 의한 “케이티앤지”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및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케이티앤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전 2항은 “파트너사”의 이의에 의한 재검사에 준용한다.

④ 공사의 완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사자재의 반입만으로는 공사의 완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파트너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파트너사”의 안전조치 의무)

① “파트너사”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파트너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파트너사”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파트너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⑤ “파트너사”는 “케이티앤지”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케이티앤지”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제17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파트너사”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케이티앤지”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사”는 “케이티앤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한다.

② “파트너사”가 “파트너사”의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케이티앤지”에게 임금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케이티앤지”는 “파트너사”에게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케이티앤지”는 그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것을 “파트너사”에게 통지하고, 임금등을 지급한 후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파트너사”에게 통지한다.

④ “파트너사”가 현장근로자들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등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임금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서류제출)

“파트너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 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케이티앤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제19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케이티앤지”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파트너사”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파트너사”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 제20조(현장대리인)

① “파트너사”는 이 계약의 책임, 품질시공 및 안전, 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케이티앤지”에게 통지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파트너사”를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케이티앤지”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제4장 대가의 지급

본 문서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생성한 문서입니다.  
본 문서에 대한 효력은 계약주체인 양사가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양사 전자서명 여부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대가의 지급)**

- ① “파트너사”는 공사기간이 60일(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30일) 경과할 때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트너사”의 대가지급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며, “파트너사”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준공 대가지급에 준용한다.
- ④ “파트너사”는 “케이티엔지”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케이티엔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⑤ “케이티엔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금융기관(“케이티엔지”의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계약금 및 선금의 지급)**

- ① “케이티엔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 ‘선금’과 ‘계약금’ 중 “파트너사”의 선택에 따라 택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금 및 계약금의 구체적인 지급조건 및 지급일정은 “케이티엔지”가 작성한 현장설명서에 따르기로 한다. 단, ‘선금’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건설공사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 2. 전문공사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 ② ‘계약금’ 지급은 “파트너사”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한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보증금을 이행증권으로 납부한자는 계약보증금 이행증권 금액의 50% 한도에서 지급한다.
- ③ ‘선금’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트너사”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기성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의 선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확정하여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케이티엔지”는 “케이티엔지” 내부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케이티엔지” 내부 사정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케이티엔지”는 계약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단,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의 합계가 당해년도 집행예정 기성금 총액보다 적어 선금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마지막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선금잔액 전부를 정산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선금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하며 이때 “케이티엔지”는 차년도 선금액에서 이월된 선금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당해연도 선금정산액 = 당해연도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당해연도 집행예정 기성금 총액)
  - 4. “파트너사”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케이티엔지” 주거래은행의 일반기업 대출금리 수준)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파트너사”는 선금의 요청시 제출한 사용계획 이외의 목적에 선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 6. “파트너사”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케이티엔지”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하여야 한다. 단, “파트너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 시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다. 사고이월 및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중지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 위험은 “케이티엔지”와 “파트너사” 쌍방이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증감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손해배상 및 해제 또는 해지**



본 문서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생성한 문서입니다.  
본 문서에 대한 효력은 계약주체인 양사가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양사 전자서명 여부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지체상금)**

- ① “파트너사”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제15조에 의한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완성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케이티엔지”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케이티엔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실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케이티엔지”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케이티엔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5. 기타 “파트너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2.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5. “파트너사”에 대한 파산 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6. “파트너사”가 지급불능이 된 때, “파트너사”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가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파트너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7. “파트너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파트너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위반 사항을 [14]일의 내에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케이티엔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케이티엔지”와 “파트너사”는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수령일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파트너사”는 “케이티엔지”의 해지 통지 시 기성부분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성부분 검사와 관련한 “케이티엔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트너사”가 기성부분 검사와 관련한 “케이티엔지”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케이티엔지”는 감리원 또는 “케이티엔지”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직권으로 완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파트너사”는 지체 없이 지급받은 선금 중 기성부분 미충당분(약정이자액을 포함한다), 제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대여금을 “케이티엔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등의 반환 또는 “케이티엔지”에게 권리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파트너사” 소유의 자재 등을 반출하는 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의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계약이행완료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케이티엔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너사”의 지급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파트너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확정되는 기성부분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2. “파트너사”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3. 기타 “케이티엔지”가 인정하는 본 조의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파트너사”의 합리적인 비용
- ③ 제2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준용한다. 다만 “파트너사”가 반환할 선금잔액에 대하여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파트너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파트너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지와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케이티엔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케이티엔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너사”의 지급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파트너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확정되는 기성부분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파트너사”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기타 “케이티엔지”가 인정하는 본 조의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파트너사”의 합리적인 비용

③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 호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준용한다.

## 제6장 하자보수

### 제28조(하자보수)

① “파트너사”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전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파트너사”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하자보수방법에 관한 의견 기타 필요사항을 “케이티엔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자의 원인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파트너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케이티엔지”의 의견은 “파트너사”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파트너사”는 “케이티엔지”의 의견에 따른 보수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 제29조(하자보수보증금등)

① “파트너사”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대가지급 전까지 케이티엔지에 현금 또는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사”가 “케이티엔지”의 하자보수청구를 받고 하자보수의무를 거부 또는 지연한 때에는 “케이티엔지”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파트너사”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파트너사”에게 부족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케이티엔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파트너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파트너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장 기타

### 제30조(상계)

“케이티엔지”와 “파트너사”는 본 계약에 관하여 “케이티엔지”가 “파트너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손해배상 기타의 채무(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 지급 후 잔액을 말한다.)와 “파트너사”가 “케이티엔지”에게 지급할 지체상금, 손해배상 기타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함으로써 정산할 수 있다.

###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케이티엔지”는 본 계약에 기하여 “파트너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파트너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자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 “케이티엔지”는 “파트너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파트너사”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케이티엔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사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파트너사”는 사전에 “케이티엔지”의 요구 또는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케이티엔지”와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본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특약사항)



계약번호 : PO220100261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케이티앤지”와 “파트너사”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생성한 문서입니다.  
본 문서에 대한 효력은 계약주체인 양사가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양사 전자서명 여부는 (주)KT&G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윤리실천 특별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해관계자(이하 “공급사”라 한다)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공급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공급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공급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급사에게 윤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다.

② 공급사는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정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유형)** ① 공급사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각 호<sup>1)</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윤리규정 제1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증여는 제외한다)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 행위에 의한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제5조(위반시 제재)** ① 회사는 공급사가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 거래물량 또는 거래규모 제한 ○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부정당업체 제재(계약 제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급사에게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22년 01월 28일

"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평촌동 100)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계약담당 김태섭 (인)

"공급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영천동) (주)에스에프에이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김영민 (인)



No.	파일명	다운로드
1	8. 세종인쇄공장 특기시방서 최종(안).pdf	<a href="#">download</a>
2	(계약내역서)KTNG 세종 인쇄공장 자동화참고 신축공사_SFA_220113.pdf	<a href="#">download</a>
3	03.(도면집)KT&G 세종 ㄹ인쇄공장 통합물류 자동참고 신규도입_SFA_21.12.10.pdf	<a href="#">download</a>

